



# 회사의 외부감사인 선임시 감사위원회와의 역할

2024.9.12

# 회사의 외부감사인 선임을 위한 감사위원회 역할은?

외부감사법은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제고를 위해  
감사(위원회)가 외부감사인을 **‘선정’** 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

## 감사위원회의 역할



외부감사인 후보를  
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평가하는 것

## 회사의 역할



감사위원회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 
회사의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하는 것

- ✓ 감사(위원회)는 감사인을 선정하기 전에 미리 감사인 선정기준 및 절차를 마련
- ✓ 외부감사인 후보평가를 위한 회의를 진행하고, 회의의 주요 내용을 문서화

# 외부감사인 선정권자

주권상장법인,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및 금융회사의 경우  
다음의 구분에 따라 감사인 선임

구분	감사인 선정
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	감사위원회가 선정한 감사인
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	감사인선임위원회 승인을 받아 감사가 선정한 감사인

그 외의 회사는 감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정  
(다만, 비상장회사 중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감사위원회가 선정)

구분	감사인 선정
법령상 감사를 두지 않는 경우 (상법: 자본금 10억원 미만)	회사가 선정
감사가 없고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인 유한회사	사원총회 승인 필요

# 감사인선임위원회

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주권상장법인, 대형비상장주식회사, 금융회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정

## [ 감사인선임위원회 ]

구분	내용
구성원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반드시 5인 이상(5~6인)</li></ul>
구성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감사 1명</li><li>사외이사 2명 이내</li><li>기관투자자 주주의 임직원 1인</li><li>일반 주주 1인</li><li>채권액이 가장 많은 금융회사 임직원 1명</li></ul>
외부전문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대체 가능</li></ul>
약식위원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구성원 전원 동의시 3인(위원장, 감사, 사외이사)으로 구성하고 전원 출석 및 전원 찬성으로 의결</li></ul>
참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재적위원 2/3이상</li></ul>
승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출석위원 과반수 찬성</li></ul>
유의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사내이사 불가</li><li>위원장 호선: 사외이사 중 호선, 사외이사 없는 경우 감사 제외한 위원 중 호선</li></ul>

# 외부감사인 선임기한

회사의 유형에 따른 감사인 선임기한을 고려해  
사전에 외부감사인을 선정해야 함

구분	감사인 선임기한	2025년(선임기한)
감사위원회 의무설치 회사 <sup>(*)</sup>	사업연도 개시 전까지	'24.12.31
직전 사업연도에 외부감사를 받지 않은 회사	사업연도 개시 후 4개월	'25.4.30
이 외 외부감사 대상회사	사업연도 개시 후 45일	'25.2.14

## 감사인 선임대상 사업연도

주권상장법인,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및 금융회사는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 감사인으로 선임

- 그 외 외부감사 대상회사는 매 사업연도마다 감사인을 선임

<sup>(\*)</sup>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과 특정 유형을 제외한 금융회사

❖ (제외 회사1)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 5조원(상장사는 2조원) 미만 보험회사·여신전문금융회사·종합금융회사·금융투자업자

❖ (제외 회사2) 자산 7천억원 미만 상호저축은행

# 외부감사인 선정기준 및 절차 마련

감사(위원회)는 외부감사인을 선정하기 전에  
미리 감사인 선정기준 및 절차를 마련할 필요

1 외부감사법과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필수항목을 고려해 후보평가기준을 문서로 정해야 함

## 외부감사법 시행령 13조: 필수적인 후보평가기준

✓ 감사시간·감사인력·감사보수 및 감사계획의 적정성

✓ 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

- 독립성: 감사 의견에 편견을 발생시키는 등 부당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이해관계를 회피하는 것
- 전문성: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교육훈련 및 경험, 감사대상 회사의 업무 등에 대한 전문지식 등을 충분히 갖춘 것

✓ 전기감사인에 관한 사항 - 감사시간·인력·보수·계획의 충실한 이행 등

2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

선정기준 등 마련

- 감사시간 인력, 보수, 계획
- 감사인의 독립성, 전문성 등
- 전기감사인에 관한 사항

▶ 외부감사인 선정

감사인 선정을 위한  
대면 회의  
(회의 내용 문서화 필요)

▶ 감사인 선임보고

- 주주(사원) 보고
- 증권선물위원회 보고

▶ 사후평가

감사보수, 시간, 인력에  
관한 사항 준수 여부 확인

# 참고: 외부감사인 후보평가기준

외부감사인 선정기준을 문서화하고 이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 
주요 평가 항목을 고려하여 구성된 선임평가표를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

→ 회사별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도를 항목별 가중치에 반영하여 평가에 활용 가능

## 외부감사인 후보 평가기준 예시

구분	평가항목	
입찰가격		
감사품질	(1) 감사업무 수행팀의 역량	감사담당자의 경험
		감사담당자의 산업전문성
		파트너의 업무분담
		매니저 및 스텝의 업무 부담
		제재조치 및 징계사항
	(2) 회계법인의 역량	내부품질관리
		독립성 및 법규준수
		과거 수행업무의 적정성
	(3) 감사수행 절차의 적정성	투입인력 및 투입시간의 적정성
		파트너 및 매니저의 업무 관여도
		위험분야에 대한 감사 관여도
		전문가 활용
		감사위원회와의 의사소통